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

의안번호	738
------	-----

발의년월일 : 2009년 1월 21일  
 발의자 : 정준희 의원 외 9인

1.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시대의 의궤”에 대한 반환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반환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조선왕조 의궤전시회 개최  
 :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의궤를 모아 전시함으로써 우리의 기록문화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줌.
- 조선왕조 의궤에 나오는 물품(상, 병, 주전자 등)을 재현(품목별 4벌씩)하여 국내외에 경매  
 : 의궤가 총4부이므로 상징적인 의미로 4벌씩 재현함.
-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다큐멘터리를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제작하여 해외 대학에 보급
- 조선왕조 의궤 및 의궤에 그려진 물품을 활용한 기념품 및 관광상품 제작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관심 제고와 해외 의궤 소장처 관계자들의 이러한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조선왕조 의궤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장 긴 장서이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의궤 소장처에서는 의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의궤반환과 관련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 관심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안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 나. 예산조치: 협의가 필요함

4. 이송처

- 서울시장  
 (관련실국 : 서울특별시 문화국, 서울역사박물관, 홍보기획관, 경쟁력강화본부 등)

(다음 페이지에 계속)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문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시대의 의궤” 반환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 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의궤를 모아 전시를 개최하여 이들과 소통하여 반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선왕조 의궤에 나오는 물품을 재현하여 국내외에 경매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의 일부를 되살린다.

셋째,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다큐멘터리를 우리말과 다국어로 제작하여 해외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조선왕조 의궤 및 의궤에 그려진 물품을 활용하여 기념품과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상과 같이 해외의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외 소장처의 관계자들에게 의궤반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할 것을 촉구함.

2009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다음 페이지에 계속)